

일반직원재심위원회규칙

제정 2002. 3. 1
개정 2012. 7.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청강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일반직원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법인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심사 및 결정 등 재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심위원회 구성) ①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이사 중 2명
2. 대학의 총장
3. 기획실장
4. 교육지원처장

제3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찰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나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위원 중 최 상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재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재심 청구) ①징계처분 및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때는 징계의 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과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자의 소속기관명, 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징계결의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
3.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입증 방법, 증거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제6조(심사)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 청취 등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8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재심 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2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단, 진술을 포기하거나, 2회 이상 서면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응하거나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 재심 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의 심사 ·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당사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 ·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재심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 ·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재심청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2.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수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

정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통보한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통보한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 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 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3조(재심심사결정서 송부) ①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